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동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677 발의연월일: 2025. 4. 9.

발 의 자:정동만·정희용·박상웅

임이자 • 이달희 • 김선교

강민국 · 엄태영 · 이인선

박성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시장·부지사, 지방공사의 사장 등의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 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인사청문 대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의 모든 과정을 혼자 준비하기는 어려워 「인사청문회법」과 유사하게 행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후보자에게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 관은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 47조의2제3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7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이 요청된 후보자에게 지방자치단체 등관계 행정기관은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7조의2(인사청문회) ① · ②	제47조의2(인사청문회) ① · ②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③ 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이
	요청된 후보자에게 지방자치단
	체 등 관계 행정기관은 필요한
	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
	<u>있다.</u>
③ (생 략)	<u>④</u> (현행 제3항과 같음)